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사례 1. 직전사업연도에 공제･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분 2021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 ⦁ 과세표준금액(결손금) (법인세율) ⦁ 법인세 산출세액 ⦁ 공제감면세액 ⦁ 법인세 결정세액 (납부세액) 100,000,000원 (10%, 20%, 22%, 25%) 10,000,000원 0 20,000,000원 (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,000,000원 포함) △200,000,000원 ☞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백만원(총납부세액 20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)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- 2022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 •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：100,000,000원 → 환급신청세액 한도액：10,000,000원 ⦁[10,000,000원]－[(100,000,000원－100,000,000원)×0.1]＝10,000,000 사례 2. 직전사업연도에 공제･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21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 ⦁과세표준금액(결손금) (법인세율) ⦁법인세 산출세액 ⦁공제감면세액 ⦁법인세 결정세액(납부세액) 100,000,000원 (10%, 20%, 22%, 25%) 10,000,000원 2,000,000원 18,000,000원 (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,000,000원 포함) △200,000,000원 ☞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8백만원(총납부세액 18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)을 전액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- 2022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 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